##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306

발의연월일: 2022. 11. 18.

발 의 자:윤두현·권성동·김영선

류성걸 • 박대수 • 양금희

유창현 • 이철규 • 정운천

최연숙 • 태영호 • 홍석준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숙고기간을 부여하면서도,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단축하고 있음.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 교부의 경우와는 달리 숙고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함.

그런데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 서와 가맹계약서를 동시에 교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실무 상황을 고려하여 가맹계약서 교부의 경우에도 단축 규정을 도입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 바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 법률 제 호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4일"을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계약 제한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
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등) ①
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	
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	
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u>14일</u> 이	<u>14일(가</u>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u>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에</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u> 경우에는 7일로 한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